##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72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김남근 • 권향엽 • 김동아

김문수・김용만・김 윤

김한규 • 문금주 • 박지원

박해철 • 백승아 • 양부남

이광희 · 이기헌 · 이용우

이재강 · 임미애 · 임호선

정동영·채현일·최민희

황정아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 고, 보호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함.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이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는 피해자의 가정폭력 보호·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의 5에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조의6(피해자의 주거 자립지
	원)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
	거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
	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
	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
	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
	게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
	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
	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u>수 있다.</u>